##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091 발의연월일: 2022. 8. 31.

발 의 자:윤준병·김정호·김철민

김성환 · 양정숙 · 안규백

오영환 · 이상헌 · 신정훈

이용선 • 민형배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올해 2022년 말 일몰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제도는 농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후계농업인이 부족한 상황에서 농촌 고령화추세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바,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반드시필요한 상황임.

종래 농림어업인과 이들의 협동조합법인에 대한 세제의 감면·면제 혜택이 단기적으로 자주 일몰기한이 연장되는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정책대상집단의 불안과 불평이 반복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현 정부 임기 내내 농림어업인과 이 들의 협동조합법인에 대한 각종 조세 감면과 저율 과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제도 등에 대하여 올해 2022년 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 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산림지 • 어선 • 어업권 • 어업용 토지 등 · 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 · 초지 · 산림지 · 어선 · 어 업권 · 어업용 토지등 · 염전 또 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 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 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 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 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 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 (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 이라 한다)에게 2022년 12월 3 -----2027년 12월 3 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 1일----

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
세의	100분의	100에	상딩	하는
세액	을 감면형	한다.		

- 1. ~ 3. (생 략)
- ② ~ ⑧ (생 략)


-----.

- 1. ~ 3. (현행과 같음)
- ② ~ ⑧ (현행과 같음)